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현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0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1일
발 의 자: 김현기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김용호, 김인제,
김종길, 문성호, 옥재은,
윤종복, 이민석, 이종환,
이효원, 황유정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’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(안 제33조제2항제1호)
- 나.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3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감독) ① (생 략)	제33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.
<u><신 설></u>	<u>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</u>
<u>1. · 2. (생 략)</u>	<u>2. ·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 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.</u>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조(감독)제2항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사항(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)을 추가하고 제3항 “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”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